

채무조정 요청서

☐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
☐ 채무조정 요청대상

채권금융회사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
☐ 채무조정 요청사유

실직	폐업	질병 및 사고	소득 감소
☐	☐	☐	☐
기타			
☐ ()			

☐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- ◇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- 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 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 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- 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
◇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1.채무조정요청서 2.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동의서 3.채무조정안 4.변제능력 입증자료
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아이엔유크레디트대부(주) (☎02-6204-6500)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_____ (인)

채무조정안(채무자용)

☐ 신청인 기본정보

(단위 : 원)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	
직업	월평균 소득(A)	월평균 생계비(B)	금융비용(C) (타 대출 상환액)	가용소득 (D)
	(A)	(B)	(C)	(D) = (A)-(B)-(C)

※ 월평균 소득(A)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.
월평균 생계비(B)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.

☐ 채무조정 요청대상

채권금융회사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
☐ 채무조정 요청사항

(단위 : 원)

구분		조정 내용	
상환 유예	(Y / N)	희망 유예기간	
만기 연장	(Y / N)	희망 변제기간	
이자율 인하	(Y / N)	이자율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원금 감면	(Y / N)	원금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이자 감면	(Y / N)	☐ 이자 감면	☐ 연체이자 감면
기타 사항	(Y / N)	- (상환방법 변경) 원리금균등상환방식→만기일시상환방식 - (변제금충당순서 변경)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→비용, 원금, 이자 순서	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

개인(신용)정보 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(주) 귀중

본인은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제33조, 제34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22조, 제24조 및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귀사가 본인이 신청한 채무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.

[개인(신용)정보의 항목]

- (개인식별정보)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, 직장명, 전화번호, email, 입금계좌 등
(신용거래정보)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부, 보증, 담보제공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(신용능력정보) 개인의 재산, 채무, 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 등
(신용도판단정보) 개인신용평점, 신용등급, 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등
(공공기관정보) 개인회생, 파산, 면책, 채무불이행 등재 등 법원의 재판 결정정보, 체납정보, 경매관련 정보, 사회보험·공공요금·행정처분 정보 등
(기타) 기타 채무조정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

[개인(신용)정보 조회]

- 1)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 - 상기 [개인(신용)정보의 항목] 과 동일
- 2) 조회목적: 채무조정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 등
- 3) 조회처: 신용조회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, 공공기관 및 통신회사
- 4) 조회동의 효력기간: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채무조정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* 단, 거절·철회 된 경우 그 시점까지

[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]

- 1)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항목 - 상기 [개인(신용)정보의 항목] 과 동일
- 2)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채무조정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 등
- 3)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
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채무조정이 귀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또는 거래종료(채권·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) 후 5년까지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보유·이용 됨

[개인(신용)정보 제공]

- 1)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(신용)정보 제공
 - *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 - 신용조회회사(NICE신용평가정보, KCB),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
 - * 개인(신용)정보 이용 목적: 신용조회회사(업무 및 신용도 평가,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)
 - 신용정보집중기관(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등)
 - *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 - 상기 [개인(신용)정보의 항목]
- 2) 제후회사에 개인(신용)정보 제공
 - * 제공받는 자: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, (주)크리젠솔루션, 채무조정 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회사, 차입금융기관, 업무제휴 회사 등 *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
 - * 개인(신용)정보 이용 목적: 채무조정 계약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,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,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, 금융사고 조사, 법령상 의무이행, 채무조정 관련 종이문서 보관 등
- 3)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 - * 신용조회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후회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, 제후회사에 제공한 개인(신용)정보는 거래종료일 이내에서 제후계약 종료시까지 보유·이용됨

※ 제공된 개인(신용)정보는 동의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(신용)정보 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불가능합니다.

본인은 귀사가 상기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를 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